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34호

「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8월 23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회의장

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개정(2016. 5. 29.)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5조, 제6조제6호)
- 나. 중복지원 금지 삭제(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795호 부칙 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820-1474, E-mail : jurakim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동작구민” 을 “서울특별시 동작구민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“재향군인회”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재향군인회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모든 구민” 을 “서울특별시 동작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동작구” 를 “구” 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향군인” 을 “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” 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(이하 “지원대상사업 등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“(지원대상사업)” 을 “(지원대상사업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

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”을 “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향군인회 운영비

제7조제2항 중 “지원받은 사람은 「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지원받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795호 「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6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<u>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</u>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재향군인회”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「<u>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회</u>」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구민의 협력) <u>모든 구민</u>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<u>동작구의</u>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예우) <u>재향군인에게</u>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제5조(예산지원) <u>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동작구민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재향군인회”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<u>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 재향군인회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구민의 협력) <u>서울특별시 동작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<u>구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예우) <u>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은 재향군인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예산지원) <u>구청장은 법 제16</u></p>

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(생략)

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「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795호
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
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

①(생략)

②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(이하 “지원대상사업 등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사업 등)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 등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재향군인회 운영비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지원받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795호
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
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

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